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2
----------	-----

2021. 2. 18.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5. 강남구청장(위생과)
- 나. 상정의결
 -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1.2.18.)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보건소장 : 양오승)

- 가. 제안이유
 - 강남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 , 용어 정리(안 제1조~제2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5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9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 급식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의 위탁)

○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에 210백만원 반영되었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20. 11. 27. ~ 12.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1일 평균 단체급식은 196만명¹⁾에 이르고 영·유아들에게 일일 급식 및 간식을 1회 이상 제공하고 영·유아의 영양관리와 식습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람의 식습관은 유아기나 아동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성인기 이후의 식습관과 일생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알려져 있음.

- 따라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혀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어린이

1) 2019년 통계청 기준

를 보육 및 교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의 식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체계적인 급식관리 운영을 위해서 전문적인 급식관리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음.

-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등 100인 이하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 시설은 법적으로 영양사 의무고용 시설이 아니라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바 위생 및 영양관리에 큰 효과를 얻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00인 이하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에 대해 주로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교육, 급식소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보급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예시>²⁾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2조(정의)제3호에서는 “위생관리”를 정의하고 있으나 사용되는 조문용어가 없는 바 정의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안 제3조(설치 및 운영)의 제목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제1항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³⁾가 2020.12.29. 개정되어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었는 바 조례로 법률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2) <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020.12.29.개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센터의 기능) 중 ‘사업을 수행한다.’ 보다는 ‘기능을 수행한다.’로 <사례>4)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제6호 중 ‘위해’는 ‘위하여’로 규정하는 것이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운영의 위탁)의 제목은 ‘(사무의 위탁)5)’으로 하고 제1항 중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보다는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2항 중 ‘준용한다.’는 일부 수정해서 적용한다는 의미므로 ‘에 따른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예산의 지원)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다는 ‘제6조에 따른 센터 사무의 위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2항 중 재정지출을 예산 또는 기금에서 지원하려는 의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법령에서는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예산편성기준6)에서도 단위사업(동일한 사업)에서는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회계질서의 올바른 운용을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 중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바 집행부 예산부서의 의견도 같음.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법」 제89조7)

4)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능)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5) 자치법규 입안실무 매뉴얼. 법제처, 2013. p.192

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7)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다만, 제2
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⁸⁾에 법령의 용도 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
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
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으로 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
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용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
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정과 차이가 있는 바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안 별표의 제목은 <예시>⁹⁾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식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모든 활동지원
 3.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9.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위생관련시설 및 집기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10. 모범음식점 중 주문식단체 또는 반찬선택제 시행업소 포상지원
 11. 학교 급식소에 대한 집단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12. 음식문화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
 13. 외식산업육성을 위한 행사 지원
 1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9) <예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4조 관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안 제10조제2항을 보면 사업의 지출을 예산 또는 기금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 또는 기금 중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금년에는 해당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1년도는 예산으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72호

제안일자 : 2021.2.18.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의 제목 및 자구 중 법령 입안 기준에 맞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관련 예산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조문을 간단명료하게 수정(안 제1조)
- 상위 법령에 맞게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안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수정(안 제4조)
- 입법 기준 및 내용에 맞게 조의 제목 및 조문 수정(안 제6조)
-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조문 정리(안 제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을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로, “운영함에 있어”를 “운영하는데”로, “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설치 및 운영)”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위생”을 각각 “위생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양지도”를 “영양지도(채식 및 알러지 대상 어린이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위생”을 “위생관리”로,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을 “위생관리”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운영의 위탁)” 을 “(사무의 위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을 위탁” 을 “사무를 위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준용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을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조례」 ” 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 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특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 편성된 2021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4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내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u>운영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u>사업</u>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 급식소 <u>위생</u>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 급식소 <u>위생</u> 및 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p>제1조(목적) ----- ----- <u>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u> ----- ----- ----- <u>운영하는데 ----- 정하는 것</u> -----.</p> <p>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 ----- ----- <u>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원안과 같음)</p> <p>제4조(센터의 기능) ----- <u>기능</u>----- 1. ----- <u>위생관리</u> ----- ----- 2. ----- <u>위생관리</u> ----- -----</p>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
지도

4. ~ 5. (생략)

6. 그 밖에 어린이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등
을 지원한다

1. ~ 6. (생략)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
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
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
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

3. ----- 영양
지도(채식 및 알러지 대상 어린이
포함)

4. ~ 5. (원안과 같음)

6. ----- 위생관리 --
---- 위하여 -----

제5조(지원대상) -----
----- 위생관리 -----

1. ~ 6. (원안과 같음)

제6조(사무의 위탁) ① -----

----- 사
무를 위탁-----.

1. ~ 4. (원안과 같음)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
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 제6조
에 따른 사무의 위탁-----
-----.

②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진흥기금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특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 편성된 2021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72
----------	-----

제출년월일 : 2020. 2. 5.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위생과

1 제안이유

강남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5조)
-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9조)
- 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 급식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나.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에 210백만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조례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2020.11.27. ~ 2020.12.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4.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6. 그 밖에 어린이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
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4.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4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1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내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비 및 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 위탁운영비	210,00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2,730,000
	소계(b)	210,00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2,730,000
□ 총 비용(a-b)		210,00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2,73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국비		63,000	189,000	189,000	189,000	189,000	819,000
시비		73,500	220,500	220,500	220,500	220,500	955,500
구비	지방세수입	73,500	220,500	220,500	220,500	220,500	955,5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10,00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2,730,000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사항없음

6. 작성자 : 위생과 행정8급 주미규(70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민간위탁 4개월 운영비용 : 210,000천원